

위험

부정수급 사이렌

특정 업체의 “**독점 및 가격 담합**”을 통한 **부정수급** 주의

[CASE] 부정사례

일부 판매업체가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제조사와 **독점 계약**을 체결하여 타업체의 사업 참여를 방해, 경쟁이 없는 상태를 악용하여 시중가보다 높은 단가로 **가격을 담합**하여 **보조금 과다 편취** 위험 감지

→ **가격 부풀리기(가격 담합)**을 통해 **보조금**을 편취하는 행위는 “**범죄**”

[SCHEME] 부정수법

1. 제조사와 일부 판매업체가 결탁하여 특정 품목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확보
2. 타 판매업체가 사업 참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여 가격 부풀리기(담합) 시도
3.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업장과 계약을 유도하여 보조금 과다 편취

→ **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1호(거짓·부정)에 해당**

[RISK] 행정처분

- **(환수)** 가격 부풀리기를 위한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 전액 및 이자 환수
- **(추가환수)** 지급된 보조금의 최대 5배
- **(참여제한)** 향후 5년간 공단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
- **(형사고발)** 보조금 편취를 위한 고의성 및 기망 행위 시 형법 제347조(사기)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

<불공정거래 신고방법>

- **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** (<https://ftc.go.kr/>) 또는 **문의 전화** (☎1670-0007)

민원·참여



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



불공정거래신고

<부정수급 신고방법>

- **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** (<https://portal.kosha.or.kr/>)

고객센터



민원질의하기



부정행위신고

